

공동의회 안내

일시 : 6월 21일 (주일), 1부 예배 직후

장소 : 전층 본당

임마누엘서울교회 정관 개정(안)

개정 전	개정 후	개정사유
<p>제14조 (공동회의의 의결사항) ② 공동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항 제3호, 제5호, 제6호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4조 (공동회의의 의결사항) ② 공동의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항 제3호, 제5호, 제6호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현행규정은 회의 개최시 마다 성원(과반수 출석)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 있음• 총회헌법 II.정치, 제18장(회의)제1조, 제4항은 "공동의회개회는 회집되는 회원으로 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
<p>제21조 (교회 재산의 정의와 구분) ③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.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권을 가지되, 지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1조 (교회 재산의 정의와 구분) ③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.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</p>	<p>고소, 고발을 통하여 임마누엘서울교회 정관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광주세무서에서는 "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"라는 내용으로 정관수정 필요통보</p>